

덴마크의 활성화 정책

Per Kongshøj Madsen (덴마크 올보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덴마크 노동시장 정책 및 고용정책의 특징

최근 몇 년간 덴마크는 상당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EU 최고 수준의 고용률, 낮은 실업률,

〈표 1〉 덴마크 노동시장과 EU-27의 주요 지수 (2009년 1/4분기)¹⁾

| | 덴마크 | | | EU-27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 경제활동참가율 (%) | 80.5 | 83.9 | 77.0 | 70.8 |
| 고용률 (%) | 76.2 | 78.9 | 73.5 | 64.6 |
| 시간제 근로(%) | 26.1 | 15.6 | 37.8 | 18.6 |
| 실업률 (2009년 7월) | 5.9 | 6.4 | 5.4 | 9.0 |
| 평균 주당 근로시간 | 34.5 | 36.7 | 31.8 | 37.0 |
| 임시직 (%) | 8.6 | 8.4 | 8.7 | 12.5 |
| 자영업(%, 2007) ²⁾ | 6.4 | 8.7 | 3.7 | 16.0 |
| 직전 3개월 이내 취업(%) | 6.1 | 5.5 | 6.8 | 3.2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GDP 대비 %, 2007) ³⁾ | 1.08 | - | - | 0.47 |

주 : 1) Eurostat: Labor Market Latest Trends – 1st Quarter of 2009, Data in Focus no. 35 – 2009.

2) 자영업자 비중의 출처는 Employment in Europe 2008, statistical annex.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출처는 Eurostat: Labor Market Policies –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2007, Data in Focus 23/2009.

전반적으로 견실한 거시경제적 성과 등은 덴마크를 유럽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부각시켰다. 또한 덴마크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요소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특징을 겸비한 흥미로운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표 1>은 EU 평균 대비 덴마크 노동시장의 주요 성과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덴마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2009년 7월 덴마크 실업률은 5.9%로 전년 동기의 2.3%보다 증가한 것이지만 그래도 EU 27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EU 평균 상황과 비교하면 자영업이나 임시계약직 등 비전형 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자영업 비중은 EU 전반적인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 이는 농업 등 1차산업 고용이 낮은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시계약직의 비중도 낮은 편으로 EU 수준의 절반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무기근로계약(open-ended contract)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주가 임시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에 와서야 덴마크의 수준이 EU 수준에 근접해진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로 여성이므로 이는 덴마크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하겠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물론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은 짧지만 덴마크에서 매우 흔한 일반적인 현상이다.

<표 1>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피고용인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신규채용 근로자 비중이 6.1%로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량적 유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표 1>은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보여 준다. 2007년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중은 EU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덴마크 노동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조직화가 높다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의 70~80%가 노조에 가입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용주도 덴마크에 몇 안 되는 대규모 고용자 단체에 속해 있다. 그 결과 임금과 근로조건은 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본고에서는 실업자의 소득지원과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덴마크 노동시장 모델 전반에 대한 설명은 Madsen(2006, 2007)을 참고할 수 있다.

■ 1990년대 이후 덴마크 노동시장 정책의 발전

실업자의 소득지원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덴마크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업 보험기금에 가입된 (피보험)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무보험) 실업자로 양분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한 사회부조(현금 수당)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지역정부에서 관리하고 재원을 일부 부담한다. 실업자의 대다수는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다(2007년 현재 7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이원화 구조는 덴마크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만 1990년대 초부터 일련의 개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특징으로 나타났다.

- ① 피보험 실업자 대상의 초기 '소극적' 기간, 후기 '활성화' 기간이라는 2기 수당제도 도입 :
그 후 몇 년에 걸쳐 소극적 기간은 4년에서 지금의 9개월(고령층)과 6개월(30세 미만)로 점차 단축되었다. 실직수당의 전체 기간은 현재 4년이며 '활성화 기간'은 3년 남짓이다. 1990년대 초에 총 기간은 최장 9년이었다.
- ② 실업자 개인의 '권리와 의무' 강조 :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명시하는 '취업계획'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 ③ 정책이행 권한을 지역 및 시 당국에 위임 :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정 정도 부여.
- ④ 직업훈련과 실직수당의 연계 제거 :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떠한 고용이라도 더 이상 실직 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피보험 실업자와 무보험 실업자를 위한 각각의 제도는 2007년부터 새로운 '고용센터'로 통합되었다. 2009년 8월 국영 공공 고용센터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러한 통합 과정도 완결되었다. 그러나 피보험 실업자와 무보험 실업자 사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나 실직시 소득지원 등에 있어서 법적 구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피보험 실업자는 여전히 실업보험기금에서 소득지원을 받는 반면 무보험 실업자는 시 정부로부터 현금수당을 지급한다.

■ 실업자 소득지원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소위 겐트제도를 근간으로 한다(Clasen & Viebrock, 2008). 이는 국가 공인을 받은 31개의 실업보험기금으로 구성된다. 그 중 4개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실업기금이다. 1개 기금은 자영업자 전용이다. 직종 변경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실업보험기금을 변경하는 경우 실업수당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실업보험기금의 대부분은 1개 이상의 노조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덴마크 노동시장의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이유로 종종 거론된다. 실업보험기금 가입과 노조 가입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한다. 이는 실업보험기금과 노조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에 일부 기인한 것이다. 물론 노조에 가입하면 실업수당 이외에도 지역별 임금협상이나 고용주와 갈등관계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실업자소득지원제도는 1970년에 실시했던 마지막 대대적인 실업수당제도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실업률 증가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업수당 재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켰다(‘한계적’ 공공재정의 원칙 (public financing “at the margin”). 실업보험기금 가입자들은 실질 실업률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회비만 내도록 하였다.

실업보험기금 재원방식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공재원의 비중은 전체 실업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990년대 초와 같은 고실업 시대에는 정부 부담이 80%까지 올라가지만 경기 활황기의 경우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무보험 실업자는 실업수당에 대한 권리를 소진한 사람들 이외에는 애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다(가입 요건은 아래 참조). 이러한 미가입자의 경우 시정부의 현금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하에서 상술하듯 현금수당은 자산조사를 포함하며, 지급 금액은 실업자의 가족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가입요건

실업보험기금 가입은 자발적이다. 가입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가입자는 덴마크에 체류하고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EEA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 ② 실업보험기금 가입시 연령이 18~63세이어야 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자영업자로서 고용 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 ③ 최소 18개월의 직업훈련 수료 후 2주 이내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전일제나 시간제 근로자 모두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간제 보험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시간제 보험의 경우 납입금이나 실업수당이 모두 낮게 책정된다. 수당은 전일제 피보험자 대비 3분의 2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자 납입금 및 혜택

실업보험에 대한 가입자 납입금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액 납입금 : 2009년 납입금은 연 3,480 덴마크 크로네(DKK)로 책정되었다(467 유로).
- ② 관리수수료 : 실업보험기금별로 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 ③ 자발적 조기퇴직제도에 대한 자발적 조기퇴직 납입금 : 2009년 납입금은 전일제 피보험자 기준으로 5,076 DKK (681 유로)이다.

가입자 납입금은 모두 세금 공제되므로 가입자의 순비용은 총 비용의 4분의 3에 달한다.

피보험자가 실업하여 실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실업보험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년 경과.
- ② 전일제의 경우 고용 요건에 따라 해당 직종이나 직업에서 지난 3년간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고용되어 최소 52주간 근로했어야 한다. 일반적인 전일 근로시간이 주당 37시간이라 가정하면 전일제 피보험자의 고용 요건은 지난 3년간 총 1,924 근로시간 이상임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규칙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아래 참조). 원칙적으로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실업자는 공공 고용센터(PES)에서 제안하는 일자리 중 자신이 수행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수용해야 한다. 가령 실직한 학자의 경우 우편배달부로 일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노동시장 훈련에 참여하거나 임금보조금으로 취업하였다고 해서 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지급률은 개별적으로 다르며 실직 전 근로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의 최대 90%까지 책정될 수 있다. 2009년 최대 지급액은 전일제 피보험자 기준 1일 725 DKK(97 유로)이다. 실업수당은 주 5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연 최대 지급액은 188,500 DKK (25,300 유로)이다. 직업교육을 마쳤으나 근로 경력이 없는 개인의 경우 특별 지급률이 적용된다.

실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적극적 구직활동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와 관련된 지침을 따르면 총 4년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4년 기간이 지나면 실업수당 수급권을 상실하고 '무보험' 실업자로서 현금수당을 신청해야 한다(아래 참조). 또한 노인연금에 해당되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제재를 당한다(예를 들면 일할 의지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조치는 수당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중단 기간은 1주에서 최장 26주까지이다. 노동국(Directorate of Labour)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고용센터가 연간 처리하는 건수는 약 98만 건인데 그 중 약 13,800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중단되었다. 이 중 3,200명은 3주 이상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Arbejdsdirektoratet, 2007a:6).

무보험 실업자

'무보험' 실업자는 실업수당 수급권을 소진한 실업자 이외에 애초에 실업수당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업자이다. 이들은 시정부에서 관리하는 현금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시정부의 현금수당은 사회정책으로 간주되며,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소관의 별도의 법에 따라 규정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분담한다.

현금수당은 자산조사를 거치고 지급액은 실업자의 가족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의 유자녀 실업자의 경우 2009년 현재 연 151,500 DKK (20,300유로)를 받는 데 비해 24세 이하의 경우 연 73,500 DKK (9,900유로)를 지급받는다.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도 과세 대상이다. 현금수당의 기간은 한도가 없으나 이 경우도 시정부에서 제안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수당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2,700명의 현금수당 수급 실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2005년 현재 전체 현금수당 수급 실업자는 약 55,000명이었다(Arbejdsdirektoratet, 2007b:6).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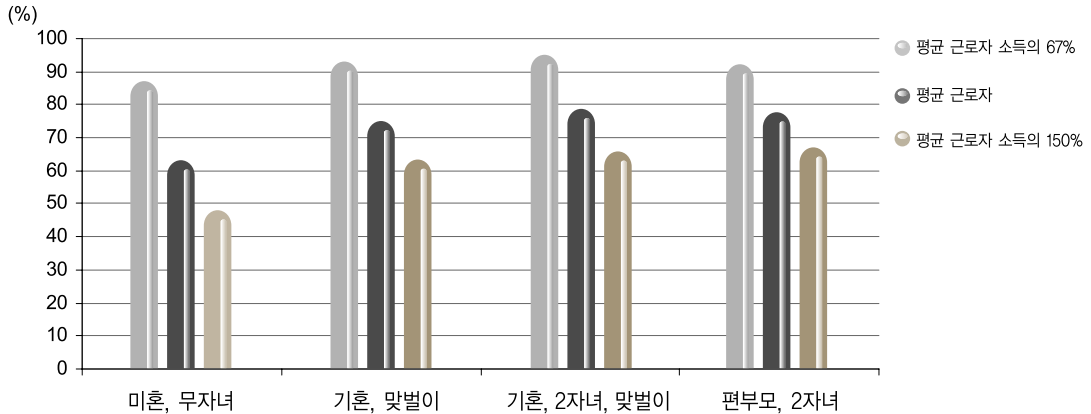
앞서 실업수당 산정방법 설명 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액은 실직전 소득의 최대 90%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실업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거 소득이 약 209,000DKK(27,900유로)을 넘어서면 총 보전율이 급격히 하락한다. 총 보전율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하면 2007년 현재 민간부문 소득근로자는 연금 납입금을 제하고 최저 169,000DKK (22,700유로)의 소득을 받는 데 비해 일반적인 영업직 사원은 224,000DKK(30,100 유로)를 번다. 고속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연소득은 454,000DKK(60,900 유로)이다.

OECD에서 가족 유형 및 소득수준별 소득보전율을 산정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고 실업보험수당 상한액을 설정해 놓은 결과) 평균 근로자(AW)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평균 근로자의 150%인 근로자에 비해 보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상황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실업보험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OECD의 계산에 포함된 기타 수당 (주택 수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간 소득보전율이 하락세에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다(LO, 2006). 소득보전율 하락의 주된 이유는 실업수당(및 기타 이전소득)을 평균임금 인상과 연동하는(index) 방식이 특수하고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동방식의 주된 요인은 실업수당을 2년 전 연 임금인상률(연금 및 유급휴직 제외)로 조정하고 0.3%포인트를 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한 금액은 실업자 중 특수 집단이나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림 1] 실직 후 첫 한 달 동안 3개 소득수준별, 4개 가족유형별 순소득대체율 : 2005



출처: OECD (2007), table 3.1.

또한 블루칼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전율이 더 낮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연금 납입금이 실업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금 납입금을 포함한) 보전율은 1982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평균 2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근래 들어 보완적 실업보험 시장이 작게나마 형성되어 발달되어 왔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계리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서비스로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용이 높고 혜택은 제한적인 관계로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4년 현재 가입자는 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전통적 실업보험기금 가입자 210만 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Forsikring & Pension, 2004:14).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바로 이원적 성격으로서, 이는 실업보험 제도의 경계선을 따르는 것이다. 개인 차원의 경계선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

자와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로 구분된다(후자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한 사회복지의 적용을 받는다).

2007년의 소위 ‘구조개혁’으로 덴마크의 공공부문도 일대 변혁을 겪었다. 시정부는 271개 단위에서 98개 단위로 대폭 감축했다(Director와 노사정협의회가 이끄는). 노동시장 지역도 14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통합되었다. 노사정협의회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담당 업무가 축소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예산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본 구조개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 ① 노동시장 정책 이행에서 시정부의 역할 증대.
- ② 사회적 파트너의 영향력 축소(기존 제도하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이 커진 데 대한 현 보수-자유당 정부와 고용부의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시정부 차원에서 본 개혁은 새로운 고용센터를 각 시별로 한 곳씩 설립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용센터는 피보험 실업자와 무보험 실업자 모두를 포함하므로 과거에는 시정부의 사회지원과와 공공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범 고용센터 14곳을 제외하고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법적 책임은 여전히 각 고용센터 내의 중앙정부 기관과 시정부 기관으로 분리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델은 일원화 제도와 이원화 제도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실업수당 지급 업무는 여전히 실업보험기금과 시정부의 사회복지실로 나뉘어 있다.

<표 2>는 고용지원제도에서 각 주체의 담당 업무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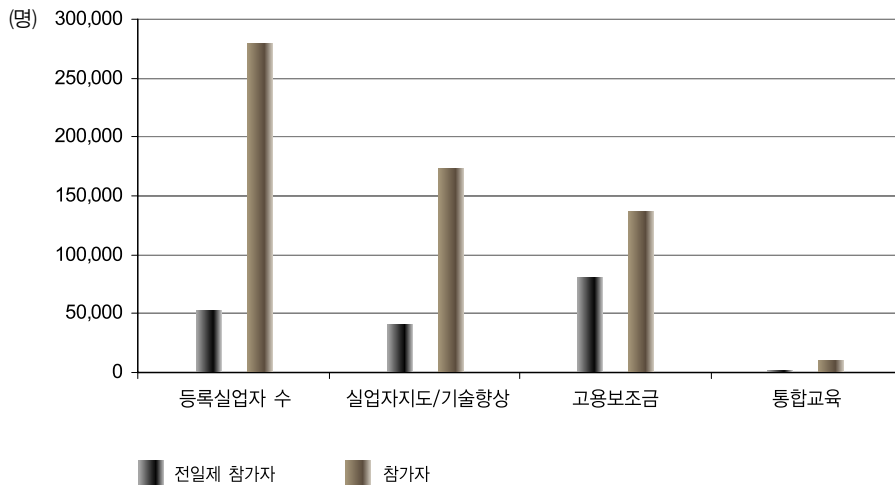
<표 2> 2007년 개혁 및 2009년 국가 공공 고용센터 폐지 후 중앙정부/지역정부/시정부의 행정 및 조합(corporatist)기관의 구성

| | 행정기구 | | 조합기구 | |
|----|--|--------------------------------------|---------|----------------------------------|
| | 명칭 | 주업무 | 명칭 | 주업무 |
| 지역 | 국가노동시장기구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총괄 | | |
| | 노동감독관 | 실업보험기금 및 시정부 현금수당 감독 | | |
| | 지역고용기구 | 지역 고용센터 운영 감독 | 지역고용위원회 | 지역노동시장 director 자문,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
| | 고용센터(Jobcentres) | 보험 가입 및 무보험 실업자 대상 고용지원업무 | | |
| | 시 정부 사회보장부 (Social security office of the municipality) | 보험 무보험 실업자 대상 현금수당 지급 | | |
| | 실업보험기금 | 실업수당 지급 및 근로 가능 여부 (availability) 관리 | | |

프로그램 및 참가자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전체 290만 노동인구 중 연간 125,000명의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소위 유연직(flexi-job)도 포함되는데 이는 업무량이 적고 임금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이다. 유연직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49,500명의 전일제 근로자가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가자 : 2008



출처: Databanks of Statistics Denmark.

이러한 수치는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 ① (구직활동을 포함) 실업자 지도(guidance) 및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최장 1년 동안 노동시장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② 정부의 고용지원제도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주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령 단기 연수 제도부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근 유연직(flexi-job)을 모두 포함한다.
- ③ 통합 교육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실업자 등록인원을 제시한다. 덴마크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가인원이 지난 몇년간 감소세에 있다. 동시에 (이는 현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전환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민간 고용주와 함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근로 우선’이라는 취지하에 상담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이민 1, 2세의 사회통합이 강조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기팅(targeting)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KLI**

참고문헌

- Arbejdsdirektoratet (2007a), *Rådighedsstatistikken 2. halvår 2006. Rådigheden hos forsikrede ledige*, København.
- Arbejdsdirektoratet (2007b), *Rådighedsstatistikken 1. halvår 2006. Rådigheden hos kontant- og starthjælpsmodtagere*, København.
- Clasen, J. & Viebrock, E. (2008),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and Trade Union Membership: Investigating the Connections in Denmark and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7, pp. 433~451.
- Forsikring og Pension (2004), *Forsikring i Velfærdssamfundet*, København.
- LO (2006): *Dagpengesystemet. En analyse af dagpengesystemets dækning*, København.
- Madsen, Per Kongshøj (2006), “How can it possibly fly? The paradox of a dynamic labour market in a Scandinavian welfare state”, in John A. Campbell, John A. Hall and Ove K. Pedersen (eds.): *National Identity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ENC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Montreal, pp. 321~355.
- Madsen, Per Kongshøj (2007),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Labour Market Policy. Country Report: Denmark*. Working Papers Number 07/51.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University of Amsterdam.
- OECD (2007): *Benefits and wages 2007, OECD Indicators*, Paris.